대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 건 2025마7664 개인회생

재 항 고 인 재항고인

원 심 결 정 수원회생법원 2025. 8. 13. 자 2025라88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24. 6. 17.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5. 4. 1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25. 6. 10.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액을 납입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2025. 6. 16. 위 결정을 송

달받고 2025. 6. 23.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

다. 원심은 2025. 7. 8. 채무자에게, ①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른 적립금 미납액을 모두 납부한 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제1심법원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만약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과 ② 송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가 각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채무자는 2025. 7. 11. 보정명령과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았으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라. 원심은 항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인 2025. 7. 11.로부터 40일이 경과하지 않은 2025. 8. 13. 채무자가 원심의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변제예정액 미납금액을 납입하지 않고 있어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도 밝히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위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항소인이 제출기간(제출기간

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3조, 대법원 2009. 2. 26. 자 2007마1652 결정, 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등 참조), 항소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위 규정들(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은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이하 '도산절차'라 한다)에도 준용된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규정에서 항고법원의 항고기록접수통지 의무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고인의 항고이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항고심의 구조는 항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항고이유를 중심으로 심판하는 것이고, 이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고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항고법원은 항고기록접수통지 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려 항고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가 부적법함이 명백하거나 직권판단사유가 있는 등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항고인이 이미 항고이유를 충분히 밝혔다거나 더 주장할 항고이유가 없음을 밝히면서 신속한 결정을 원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하는 것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특성상 일정한 기한 내 신속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해당 사건의 특성, 제1심 및 항고심의 진행 상황, 항고 경위 등에 비추어 항고이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어 항고를 기각하더라도 항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항고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3.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채무자는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0조 제3항에 따른 항고기록접수통지가 2025. 7. 11. 이루어졌으며,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결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항고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40일이고, 원심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고사건을 심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의 항고이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어 항고를 기각하더라도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항고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채무자는 변제액 미납입 및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불출석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이러한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는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액을 납부하였다거나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으로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어 항고이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원심에서 변제계획안에 따른 적립금 미납액을 모두 납부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그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심은 항고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33일이 지난 후에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3) 항고기록접수통지서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가 각하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와 별도의 기한을 정한 보정명령이 송달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기재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40일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으로서(민사소송법 제439조), 사건의 실체와 관련이 깊지 않은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간이한 재판절차이다. 이러한 항고사건의 일반적 특성에다가 개인회생사건의 특성, 이 사건의 제1심 및 항고심의 진행 상황, 항고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채무자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이므로, 항고를 기각하더라도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내려진 원심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그 잔여기간만큼 변제계획안에 따른 적립금 미납액 납부기간을 유예 받을 기대가능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항고이유서 의무제출제도가 이러한 기대가능성까지 보호하

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항고에 관한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심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항고기각 결정을 한 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마지막으로 입법론에 관하여 살펴본다.

현행 채무자회생법과 민사소송법의 해석론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규정이 도산절차에도 준용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듯이 민사소송절차와 구별되는 도산절차의 특수성, 종전의 재판실무 등을 고려하면 도산절차에는 이 사건 각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관련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1) 대법원은 파산절차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다수 채권자의 평등한 만족을 위하여 마련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06885 판결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채권채무관계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회생절차 본연의 의의·목적·기능과 공익적·정책적 필요성의 측면,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통한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 안정화 필요성, 비송사건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바48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도산절차의 특수성은 도산사건 재판절차의 진행방식을 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항고법원의 항고기록접수통지 의무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고인의 항고이유서 제출 의무를 부

과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규정을 도산절차에 준용할지 여부의 문제도 포함된다.

2) 그런데 도산절차에 이 사건 각 규정을 준용하고 나아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심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경우, 도산절차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사건의 적시 처리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가) 도산 즉시항고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파산신청 기각결정, 변제액 미납으로 인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면책신청 기각결정 또는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등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건 유형에 따라 항고이유가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다. 한편 항고심은 속심적 성격을 가지고, 도산절차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항고심으로서는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자 2013마1306 결정, 위 대법원 2024마6102 결정, 위 헌법재판소 2018헌바48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도산사건에서는 별도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나) 한편 도산사건 중에는 일정한 기한 내 신속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는데, 당시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고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본다면, 오히려 도산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3) 또한 도산절차에 이 사건 각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종전의 재판실무와도 부합하

지 않는다. 도산사건 실무상 제1심결정과 항고인의 불복사유를 검토하여 항고인에게 심리에 필요한 보정명령을 보낸 다음 항고인이 제출한 보정서 및 심문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단기간 내에 제1심결정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 각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경과를 기다려 항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고각하 결정을 하는 것보다, 그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종전 재판실무에 따라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함으로써 더욱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만약 도산절차에 이 사건 각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위와 같이 도산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개되어 온 하급심 실무를 일거에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입법정책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4)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산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와 구별되는 특수성과 재판실무 등을 감안한 재판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 도산절차에는 이 사건 각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 결론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11. 12.

재판장	대법관	김 성 수
	대법관	오 경 미
주 심	대법관	권 영 준
	대법관	박 영 재